

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시행내규

제정 2007. 11. 20 내규 제 6호
개정 2008. 4. 8 내규 제 7호
개정 2009. 6. 15 내규 제13호
개정 2010. 4. 20 내규 제19호
일부개정 2019. 4. 19 내규 제41호
일부개정 2019. 11. 5 내규 제49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양주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직제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공단의 직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공단 직제규정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

제3조(직무조사) ① 이사장은 정원관리, 직원채용 및 선발, 평가 및 보상체계, 경력개발, 조직 및 직무 재설계,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직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직무조사의 방법, 절차, 대상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며, 조사의 객관성·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③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사업 및 인력규모가 변동이 없는 등 직무조사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직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

할 수 있다. 단 3년간 1회 이상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직무평가) ① 이사장은 제3조의 직무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무 평가를 실시하여 인적자원 활용, 성과평가 실시 등 공단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직무평가 방법,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.

제3장 직위공모제

제5조(파트리더) ① 이사장은 공단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파트리더를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19>

1. 팀원 수가 과다하여 현저하게 통솔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
2. 팀내 이질적인 기능이 통합되어 팀장의 통합관리가 어려운 경우
3. 팀 사무실과 별도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 운영, 야간교대근무 등 팀장의 직접적인 지휘, 관리가 어려울 경우
4. 독립된 팀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사업소 형태
5. 기타 특정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특정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임명된 파트리더에게 필요한 경우 공단 위임전 결규정의 범위 내에서 팀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6조(파트리더의 임명대상범위) 파트리더는 인사규정 제8조에 의한 직원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08. 4. 8, 2019. 4. 19>

1. 인사규정 제38조에 해당하는 이유로 휴직중인 자
2. 인사규정 제47조에 해당하는 이유로 징계중인 자
3. 인사규정 및 내부평가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결과 하위 30%이내에 해

당하는 자

4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이사장이 제한하는 자

제7조(파트리더의 역할) 파트리더는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 이외에 팀성과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파트원 업무의 총괄 조정 관리
2. 파트원의 전문성 향상, 업무수행능력 강화, 경력개발 등을 위한 팀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
3. 기타 이사장 및 팀장이 부여한 임무 수행 <개정 2009. 6. 15, 2010. 4. 20>

제8조(직위공모) ① 이사장은 규정 제12조에 의한 팀장과 제5조에 의한 파트리더를 임명할 때에는 직위공모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1. 5>

② 제1항의 직위공모의 절차,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.

제4장 사무분장 <신설 2019. 4. 19>

제9조(사무분장) ① 기획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
2. 제규정의 제정, 개정 및 법무관리에 관한 사항
3. 위탁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인수
4. 중장기전략 및 경영계획 등 경영기획에 관한 사항
5.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업무 총괄
6. 고객관리, 민원사무 및 홍보·마케팅에 관한 사항
7. 감사 및 청렴·윤리경영에 관한 사항
8.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9. 지시사항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

10. 전산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11. 시설·환경, 재난·안전, 산업·보건에 관한 사항
12. 기록물(자료)관리에 관한 사항
13. 기타 공단 기획업무 및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

② 경영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조직 및 정원의 관리, 인사, 노무, 교육에 관한 사항
2. 회계 및 지출, 세무에 관한 사항
3. 예산편성 및 집행, 결산에 관한 사항
4. 공사, 용역, 계약, 물품구매 및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
5.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
6. 이사장협의회 및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
7. 기타 공단 운영의 지원업무 및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

③ 교통문화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문화예술회관 시설, 대관, 공연기획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2. 종량제물품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
3.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
4.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통문화팀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및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

④ 스포츠센터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에코스포츠센터의 시설관리, 운영 등에 관한 사항
2.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시설관리, 운영 등에 관한 사항
3. 에코실외구장의 시설관리, 운영 등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 11. 5>
4. 기타 스포츠센터팀의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및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

<개정 2019. 11. 5>

⑤ 환경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재활용선별장의 시설관리,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2. 버스승강장 청소사업에 관한 사항
 3. 공원 및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
 4.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
 5. 기타 환경관리팀의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및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
- ⑥ 체육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1. 공공체육시설 관리, 운영에 관한 사항
 2. 장흥관광지 및 미술관 옆 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
 3. 서부권스포츠센터의 시설관리, 운영 등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 11. 5>
 4. 기타 체육시설팀의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및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<개정 2019. 11. 5>
- ⑦ 생활체육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.
1. 양주국민체육센터의 시설관리, 운영 등에 관한 사항
 2. 옥정호수스포츠센터의 시설관리, 운영 등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 11. 5>
 3. 기타 생활체육팀의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및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<개정 2019. 11. 5>
- [본조신설 2019. 4. 19]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내규 제7호, 2008. 4. 8>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내규 제13호, 2009. 6. 15>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내규 제19호, 2010. 4. 20〉

이 내규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내규 제41호, 2019. 4. 19〉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내규 제49호, 2019. 11. 5〉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단, 제9조제4항제3호 개정 시행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